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October 10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이탈리아: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 관련 입법 초안 발표

2023년 9월 11일,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 최저한세 지침서(EU minimum Tax Directive)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Pillar 2 모델 규정 (OECD's Pillar Two Rules)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입법 초안은 유럽연합 최저한세 지침서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발간된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소개된 특정 항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 IIR은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UTPR은 IIR이 처음 적용된 사업연도 이후 1년 후, 즉 2025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IIR 및 UTPR 적용 연기(유럽연합 최저한세 지침서 제50조)를 선택한 유럽 연합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UTPR도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최저한세 (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 이탈리아 DMTT는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DMTT는 이탈리아 현지 거주법인들(Local Constituent Entities, "CEs")에 대해 모기업들의 이탈리아 현지 거주법인들에 대해 소유하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DMTT가 100%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되었습니다.
- **세이프하버 규정:** 입법 초안은 이탈리아 현지 거주법인들이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인정되는 재무회계기준 또는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정보를 산출할 경우, OECD 주석서에 따른 최저한세 면제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세이프하버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OECD 지침서:** 입법 초안은 OECD 주석서 및 행정지침(OECD Commentary and Administrative Guidance)상의 특정 항목들(예: 시장성 있고 양도가능한 세액공제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OECD 주석서 및 행정지침의 추가적인 항목들과 OECD 세이프하버 규정 개정사항들(변형된 국가별보고서 보고 관련 세이프하버 규정 및 UTPR 세이프하버 규정 포함)은 이탈리아 기획재정부에 의해 채택 예정인 별도의 법령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고 납부기한:** 각 이탈리아 현지 거주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처음 시행되는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GloBE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법 초안은 특정 현지 그룹을 제출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현지 그룹 구성 법인들은 공동 및 각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추가세 또는 DMTT 부채 정산을 위한 그룹 구성원 간의 보상 지급은 소득세 목적상 무시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행정 요건(지방세 신고서 제출 및 GloBE 정보 신고서 제출 포함)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과태료:** GloBE 정보 신고서 제출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EUR 1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이 3개월 미만으로 지연되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EUR 10,000 ~ EUR 5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법 초안은 GloBE 규칙 적용 첫 3개년도에 대한 한시적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초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은 2023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법안이 발효된 날(2023년 8월 29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Pillar 2 시행령과 그에 따른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1 서 5598 (2023.08.09)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보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 가목 및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BBB에게 저작권 사용료인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BBB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할증하여 한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BBB와 AAA의 콘텐츠의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XXX서비스")를 국내 구독자들에게 비독점적으로 유통하고 그에 대한 Distribution Fee("쟁점수수료")를 BB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함. 이후 청구법인은 국내 구독자에게 구독료를 수취하고 BBB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BBB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련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또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중 AAA 등을 위해 제3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라이선스 및 제작 의뢰 관련 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고, AAA 등으로부터 발생경비의 10% Mark-up한 금액을 수수료("쟁점용역수수료")로 지급받았으며, 2019사업연도 정상가격 보고서 상 쟁점용역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 이내인 것으로 신고함
- 조사청은 ① 청구법인이 BBB 등으로부터 저작권 이용을 허여받았으므로 BBB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할증(Gross-Up)하며, ④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하는 것으로 봄.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제기

2) 쟁점

- 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BBB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할증하여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③ 청구법인이 A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용역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청구법인은 XXX 서비스 제공을 위해 BBB 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계약 상 청구법인이 BBB 로부터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음이 명시되어 있는 바, BBB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XXX서비스에 대한 비독점적 유통자(재판매권자)로, 그에 대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임. 또한, 쟁점계약 상 모든 콘텐츠와 관련 지식재산권은 BBB가 단독으로 소유하며 청구법인에게 그에 대한 라이선스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됨 - XXX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의 서버 저장 및 구독자 전송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은 마케팅, 홍보 업무만을 수행하며 저작권을 행사한 적이 없음 - 청구법인은 저작권법상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 - OECD 과세기준 및 관련 예규 또한 재판매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청구법인이 제출한 저작권 허여 계약서 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문서였을 뿐 저작권 허여 계약서가 아님 	<p>청구법인은 XXX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BBB 의 저작권을 허여받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구독자들에게 XXX 서비스를 제공한 바, 쟁점수수료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국내 XXX서비스의 제공 주체이며 각종 법률상의 신고 주체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XXX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광고대행계약 등의 당사자이며 저작권침해소송 등 관련 쟁송의 당사자임 - 청구법인이 XXX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공서에 제출한 비디오물/영화물 저작권 계약서에 따르면 BBB로부터 저작권 및 배포권을 허여받았음이 명시됨 - 청구법인은 콘텐츠를 복제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버에 저장 및 보관한 후 구독자의 IT기기로 콘텐츠를 전송한 바, 이는 BBB로부터 저작물 복제/배포/전송할 권리를 부여받은 저작권의 보유 주체로 볼 수 있음. - 쟁점수수료는 계약서 상 명시된 산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에 상응하는 회계처리하지 않음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BBB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p>원천징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할증한 것은 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BBB와 BBB가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BBB로부터 그 상당액을 지급받아 대신 처분청에 납부함 -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서 당초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부담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 	<p>BBB 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할증한 부과처분은 정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계약 상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분이 반영되지 않은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의무가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p>AAA 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등에게 지급한 콘텐츠 제작비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출원가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용역거래를 재구성한 부과처분은 사실과 다름</p>	<p>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고하였고,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쟁점용역수수료가 정상가격 미만인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AAA에게 콘텐츠 지원서비스(시장정보 제공, 제작진행지원, 일반 행정 등)를 제공하고 발생비용에 10%를 가산하여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정상가격 범위 내임 - 처분청이 재구성한 것과는 달리,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거래 당사자는 AAA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제작비와 무관함 	<p>기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것은 정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단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업무 수준을 넘어 국내 콘텐츠의 구매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제작 관리와 같은 국내 콘텐츠 제작의 핵심 기능을 수행함 - 조사청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청구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 및 문답 거부
---	--

4) 판단

- xxx서비스의 제공방식 및 xxx 구독자들의 이용 형태를 고려할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 및 배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청구법인이 xxx 구독자들과 약관을 체결한 xxx 서비스 제공주체라고 판단되는 이상, 실질적으로 xxx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저작권 허여 계약을 체결 및 제출하고 국내 광고대행사들과 광고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도 저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BBB로부터 저작권을 허여 받아 이를 행사하고 대가를 지급한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 조세조약 제11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쟁점계약 상 청구법인이 BBB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청구법인이 BBB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에게 저작권 사용료인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할증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재구성한 거래는 콘텐츠 지원용역인 쟁점용역거래와 거래구조 및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서 거래구조를 재구성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비교되는 상황 및 조건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정도 없이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 및 정상가격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03 관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Act) 최종 지침 발표

1. 개요

2023년 8월 1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BABA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를 구현하는 최종 지침의 사전 게시물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Investing in America의제의 일환으로 예산관리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공개했으며, 제조 및 청정에너지 확대와 미국 인프라 재건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OMB가 공개한 BABAA는 연방 관보에 정식 개정본이 게재될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게시일 기준 60일 후 BABAA는 발효될 전망입니다.

2. 바이 아메리카 내용 상세

바이 아메리카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JA)은 2021년 11월 입법에 성공해 미국산 조달 특혜 규정이 적용됨.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예산에는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110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수자원 인프라 550억 달러,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에 420억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로 마련된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강	주조부터 코팅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제조품	국내 제조 요건에 더해 총 부품 비용 중 국내산 비중이 55% 이상 부품 구매 시 발생한 운송비, 관세 포함 또는 부품 생산 시 운송비와 부대비용(이익은 제외)이 포함됨. 2023년 11월 60%, 2024년 11월 65%, 2029년 11월 75%로 점진적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임.
건축자재	품목별 다음의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비철금속(non-ferrous metal): 초기 제련 또는 용융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 최종 성형, 코팅 및 조립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plastic and polymer-based products): 모든 제조 공정(초기 성분 배합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건축자재	복합 건축자재(composite building materials): 모든 제조 공정(초기 성분 배합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유리(glass): 원재료의 초기 배합 및 용융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어닐링, 냉각 및 절단) 광섬유케이블(fiber optic cable): 은 초기 프리 폼부터 모든 제조 공정(섬유 좌초 및 재킷을 통한 제조) 목재(lumber)는 박피부터 처리까지 모든 제조 공정

건식 벽체(dry wall)는 채굴 또는 초기 합성에 모든 제조 공정(샌드위치 패널 절단 및 건조를 통한 석고 플라스터 등)

일부 경우에는 연방 부처가 바이 아메리카 적용 면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최종 지침에 제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면제 승인 결정 후, 연방기관의 장은 서면을 통해 면제 필요성을 소명하고 최소 15 일 간의 공개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제요건]

- 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 국산 제품 사용으로 총 사업 비용이 25% 이상 인상되는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경제, 청정경제 모두에 대한 외국산 의존도 완화 노력이 바이 아메리카를 통해 미국내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공공 조달시장 입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